



## 미공개 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서 ‘타인’의 범위는?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 I. 개요

본 판결은, 상장회사의 기업홍보팀 직원들이 3분기 실적 공시를 1개월 앞두고 실적 가마감결과 영업이익이 급락하여 시장기대치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악재성 정보를 알게 되자,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위 회사를 담당하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미공개정보(실적 악화 정보)를 제공하였고 위 정보는 수분 내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되어 대량 주식 매도로 이어져 손실을 회피한 사안입니다.

검찰은 상장회사 홍보팀 직원들과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을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6노313 판결)에서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서 ‘타인’을 상장회사의 내부자 등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이 사건에서 애널리스트)에 한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원심(2심)은 내부자 등으로부터 직접 미공개정보를 수령한 자로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 II. 대법원 판결의 요지

본 판결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타인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서 ‘타인’을 반드시 상장회사 내부자 등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미공개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가 해당 정보를 주식 등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 직접 수령자를 통하여 정보전달이 이루어져 해당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위 정보를 주식 등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금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 판결은 내부자 등의 정보제공행위와 정보수령자의 정보이용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내부자 등은 정보수령자가 당해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인식 여부는 제공 대상인 정보의 내용과 성격, 정보 제공의 목적과 동기, 정보제공행위 당시의 상황과 행위의 태양, 정보의 직접 수령자와 전달자 또는 이용자 사이의 관계와 이에 관한 정보제공자의 인식, 정보제공시점과 이용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정보이용행위의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III. 시사점

최근 법원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에 있어 양형을 강화하는 추세이고, 검찰 역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이 클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 역시 이러한 규제 강화의  
>> 다음페이지에 이어서

기조에서 나온 판결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본 판결은 미공개중요 정보를 전달받은 2차, 3차 수령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의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규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최근 사법당국의 규제 강화 추세와 본 판결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상장회사 임직원 등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다루는 데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실적 등에 대한 대외 공표 및 증권회사 에널리스트 등에 대한 기업 IR 등을 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는 금융당국에서 직접 실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다수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상장회사, 금융회사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석  
[hsjung@yoonyang.com](mailto:hsjung@yoonyang.com) TEL. 02-6003-7047

제옥평  
[opje@yoonyang.com](mailto:opje@yoonyang.com) TEL. 02-6182-8360

최종열  
[jychoi@yoonyang.com](mailto:jychoi@yoonyang.com) TEL. 02-6182-8395

법무법인(유) 화우 (YOON & YANG LLC)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19층 (우)06164  
TEL: 02-6003-7000 FAX: 02-6003-7036  
[www.hwawoo.com](http://www.hwawoo.com); [www.yoonyang.com](http://www.yoonyang.com)

금융그룹 소개자료

지난 뉴스레터 보기